

Contents :

I.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3
II.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2	5
III. 통상실시계약	7
IV. 전용실시계약	9
V. 공동출원[등록]계약	11
VI. 양수양도계약	13
VII. 소프트웨어계약	15

신학협동연구계약 주요 검토 사항

□ 연구결과물의 귀속

- 기업단독소유에서 공동소유로, 공동소유에서 실시에 따른 이익 공유로
- 기보유기술에 대한 대가, 개량발명에 대한 대가 및 그 시기 등
-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유지비용 부담은 기술실시 실익 주체가 부담

□ 제 3 자 권리침해 보증

-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입증해야함)
- 소송 및 비용의 주체는 갑이 되어야 함.
- 사전에 선행기술조사 거치도록 요구해야 함.

□ 계약의 해제

- 해제는 원상복귀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삭제

신학협동연구계약 주요 검토 조항(사례)

제 10 조 (제3자의 권리 침해)

1.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한 용역결과물 또는 제11조의 해지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갑”이 동 결과물을 적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제 3 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자문, 수임료 등 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한 용역결과물 또는 제11조의 해지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갑”이 동 결과물을 적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제 3 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소송제기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이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다만, 권리침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2. 제3자로부터 전항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제3 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갑”의 동의 없이 그 제3자를 위한증인이 될 수 없다. 본 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민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3. 제 3자로부터 상기1항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갑”이 상기 결 과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든가 또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되지 않도록 대체, 수정하여야 하며, 대체 혹은 수정된 부분은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4.“을”은 본 계약상 “을”과 “갑”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본 용역 수행과 관 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갑”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보장한다.

(2-4 조항 전체 삭제 : 민법상 상호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과는 동떨어지는 조항임.)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중소기업, 1년, 3천만원)

제 8 조 (비밀유지의 의무)

1. “乙” 및 “연구책임자”는 “甲”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구책임자”와 “甲”은 연구시작에 앞서 참여연구원 모두 기밀유지 각서 (상호비밀유지 협약서)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정내용>

제 8 조 (비밀유지의 의무)

1. “甲”과 “乙”은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 발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우
 - ②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 ③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 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2. “연구책임자”와 “甲”은 연구시작에 앞서 참여연구원 모두 기밀유지 각서 (상호비밀유지 협약서)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날인해야 하며, 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와 관계 없이 각각의 “비밀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최종>

- 1,2항은 수정내용으로 정리
3. 본 조의 규정은 본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와 관계 없이 각각의 “비밀정보”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기술의 특성상 5년이 타당한 것으로 합의)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제 9 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1. 유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甲”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乙”의 소유로 한다. 다만, “甲”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甲”의 소유로 한다.

2. 무형적 재산의 귀속: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乙”은 “공동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 :

발명 및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비롯한 사용권한은 “甲”에게 전속되며, 특허의 사업화, 국외 기술이전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는 본 계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甲”의 책임과 권리 하에 시행된다. “乙”은 “甲”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특허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허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

“甲”과 “乙”은 “지적재산권”중 “공동특허”에 대해 제3자에게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호 사전 서명 동의를 득해야 한다.

발명 및 특허에 대한 실시에 대한 권한에 대해 “乙”은 “甲”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3)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제1항>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향후 실시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제5조의 연구비 총액의 50-150 %를 지급한다.

<제2항>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향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0.5-1%를 일정기간 동안 “乙”에게 지급한다. 단, 총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예, 총 매출액 50억 이하 1%, 이상일 경우 0.5%).

3)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甲”과 “乙”이 “제3자 실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수익금의 50%를 “乙”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단, “甲”과 “乙”이 “공동특허”에 대해 각각 자기실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일방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향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0.5-1%를 매출이 발생하는 일정기간 동안 “乙”에게 지급한다. 단, 총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4) 지분처분 : 본 계약 외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5)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상의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과 “지분처분” 규정에 따라 “乙”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고, “甲”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시, 본 계약상의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른다.

5)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상의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과 “지분처분” 규정에 따라 “甲”과 “乙”은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甲”과 “乙”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시, 본 계약상의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른다.

“甲”이 “乙”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시, 특허등록시의 지분비에 따라 “乙”에게 보상한다.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 6)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약상의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과 “지분처분” 규정에 따라 “乙”은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할 수 없고, “甲”이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할 경우, 본 계약상의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른다.
- 6)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본 계약상의 “발명 및 특허에 관한 사용권한”과 “지분처분” 규정에 따라 “乙”은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할 수 없고, “甲”이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할 경우, 위 보상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일반적인 관례로 파악함)
- 7) 관련 특허권 실시 :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乙”은 “甲”에게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甲”은 “A”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별도 협상)을 “乙”에 지불하여야 한다.
- 7) 관련 특허권 실시: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甲”과 “乙”은 별도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는다.
-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乙”은 “甲”에게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甲”은 “A”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별도 협상)을 “乙”에 지불하여야 한다.
- 8) “甲”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乙”은 최선을 다해 “甲”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3. 연구성과의 발표:

“甲”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乙”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도 역시 발표할 수 없다. 다만, 특허출원 및 등록 후에는, “乙”은 “甲”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발표가 가능하며, 발표 시에는 공동발표나 Acknowledgement에 “甲”을 표시할 수 있다.

4. 본 연구계약 이후에 파생되는 향후 연구 결과의 귀속:

이 계약기간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발생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연구성과 자체를 이용한 것이거나 연구성과로부터 파생 또는 개량되어 발생한 결과물(새로운 생체기전, 단백질 및 유전자정보 등)인 경우라도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하며, 향후 관련된 연구성과에 대한 발표도 역시 조 3항의 조항에 따른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결과에서 파생되는 추가 연구를 위해 별도의 계약체결이나 연구비용을 “甲”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본 연구계약 이후에 파생되는 향후 연구 결과의 귀속:

본 용역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기간 이내일 경우에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 공동명의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취득한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일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결과에서 파생되는 추가 연구를 위해 별도의 계약체결을 “甲”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산학협동연구계약 사례 1

5. 신의성실 규정:

제3자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乙”은 “甲”이 요구하는 자료를 “甲”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신의성실 규정:

- ① 제3자와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乙”은 “甲”이 요구하는 자료를 “甲”에게 성실하게 제공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甲”과 “乙”은 연구기간내 본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甲”과 “乙”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甲”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乙”과 연구 책임자를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기술이전계약 주요 검토 조항

□ 실시대가

-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 지급시기 및 징수기간의 산정(기산일, 기술료 대상 : 매출액, 순매출액, 순이익)
- 특허출원 및 등록 등 유지비용 부담은 기술실시 실익 주체가 부담

□ 권리획득 보장의 배제(논란의 여지 있음)

- 권리의 무효, 거절 등의 보장 배제
- 선행기술조사 의무는 기술실시자가 검토(다만 협조)

□ 선행기술, 개량기술

- 별도 협의에 의해 정하되, 우선 협상대상에 포함

기술이전계약 - 공동출원

제3조(공동 출원)

- ① “갑”과 “을”과 “병”은 본 계약의 체결 후 즉시, 발명을 기존의 “갑” 단독 출원에서 “갑”과 “을”과 “병” 공동명의로 출원인 명의변경을 하며, “갑”과 “을”과 “병”의 지분비율은 20:60:20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출원인 명의변경은 “을”과 “병”의 비용부담으로 “을”과 “병”이 수행하되, “갑”은 “을”과 “병”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갑”과 “을”과 “병”은 공동출원인으로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특허등록 이전에 권원 없는 제3자의 상기 출원발명에 대한 무단 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 비율은 20:60:20으로 한다.

제4조(실시권)

- ① “을”과 “병”은 상기 발명이 특허된 경우에 그 존속기간 동안 “갑”과 공유 특허권자가 되며, “갑”은 상기 발명에 대하여 연구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을”과 “병”은 “갑”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계약 - 공동출원

제5조(대가의 지급)

“을”과 “병”은 발명의 공동출원 및 소유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총 원정 (₩)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 1) 1차(40%) : 본 계약 체결 즉시 일금 을 지급한다.
- 2) 2차(30%) : 2005년 7월 31일까지 일금 을 지급한다.
- 3) 3차(30%) : 2006년 7월 31일까지 일금 을 지급한다.

제6조(기술자문)

- ① “을”과 “병”은 발명과 관련하여 “갑”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과 “병”이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Know-how 등을 포함한 기술에 대하여 “을”과 “병”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 ③ 기술자문은 원칙적으로 “을”과 “병”의 질의에 대해 “갑”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며, “을”과 “병”의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PC통신, e-mail 등에 의해 수행한다.
- ④ 발명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성능시험 등은 “갑”의 기술자문에 따라 “을”과 “병”의 책임 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이전계약 - 공동출원(중소기업, 3년, 1억7천만원)

제7조(개량발명)

- ①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발명을 개량, 개선하여 개량발명을 하는 경우, “갑”은 “을”과 “병”에게 그 개량발명 또는 개량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 대가와 조건은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개량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과 “병”에게 우선협상권을 인정한다.

제8조(권리의 보호, 제3자 권리 침해)

- ① 발명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과 “병”에게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상기 발명이 특허 등록되기 이전에 특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특허 등록 후, 특허료 및 기타 특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③ 제3자가 상기 발명의 특허 등록 후 그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과 “을”과 “병”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제9조(비밀보호)

- ① “갑”과 “을”과 “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기타 비밀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1. 비밀정보가 공지, 공용의 것이거나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 공용의 것으로 되는 경우
 2. 비밀정보를 본 계약의 위반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지득하는 경우
 3. 본 계약의 위반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 경우

기술이전계약 - 양수 양도

제 3 조 (국내특허출원 권리양도)

“을”은 제2조 “대상발명”의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발명”의 출원특허, 특허권을 “갑”에 양도한다. “을”은 “대상발명”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 제출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4 조 (해외특허출원 권리양도)

“을”은 제2조 “대상발명”을 해외에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발명”의 해외출원특허 (PCT출원, 유럽특허청 출원, 계속출원 및 연속출원을 포함한다.), 해외특허권(재발행 특허 권을 포함한다.)을 “갑”에 양도한다. “을”은 “대상발명”의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해외 출원을 위한 선언서 또는 양도증 등 발명자에게 요구되는 제반 서류 제출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 5 조 (양도 금액)

제3조 국내특허출원 권리 및 제4조 해외특허출원 권리를 “갑”이 “을”로부터 양도 받아 본 계약의 모든 권리를 실시하기 위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금(一金) 일억 원 (₩ 100,000,000)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상기 금액의 지급을 위해, “갑”은 “을”에게 계좌정보 등 지급을 위한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비 용)

제5조 양도 금액에 대한 관련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 7 조 (실시 권한)

“을”은 “갑”에게 양도한 제2조 “대상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기술이전 - 양수양도

제 8 조 (보증)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보증한다.

“을”은 제2조 “대상발명”에 대하여 질권 또는 실시권 등의 담보 또는 제한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 9 조 (명의 변경)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도 특허의 명의변경 절차를 수행하며 “을”은 “갑”의 명의변경 절차 진행에 협력 한다.

제 10 조 (특허권 취득 보전)

“갑”에 의한 제2조 “대상발명”의 특허권 취득 및 권리 유지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 등이 접수될 경우 또는 제삼자로부터 이의 제기,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을”은 “갑”에 의한 해당 특허권의 취득, 보전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 또는 사실관계의 증명 등 필요한 모든 협력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추가 협력)

“을”은 본 계약 제 3조 내지 제 5조에 따라 “대상발명”의 권리를 양도한 후, “대상발명”에 포함되지 않은 “을” 소유의 발명에 대하여 “갑”에게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와 관련한 우선 협상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다.

기술이전 - 기술사용

제3조(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상의 콘텐츠개발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2005.03.01-2006.02.28)까지로 한다.
- ② 상기 개발된 콘텐츠에 관하여 (을)이 제5항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상기 개발된 콘텐츠를 (을)이 제품화한 날부터 6년(2005.09.01-2011.08.31)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품화한 날”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콘텐츠 개발용역의 내용)

- ① 본 계약상의 콘텐츠개발 용역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한자 모의 시험의 지문형 문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어 지문 텍스트” 및 “문제”의 구축에 관한 콘텐츠 개발
 2. (을)의 한자 학습 프로그램인 “뿌리한자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기존 콘텐츠의 내용 감수 및 오류사항 존재 여부의 검토
-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한자어 지문 텍스트”라 함은 적절한 수준의 한자어를 포함하는 200 내지 500개의 한국어 지문 텍스트를 의미하며, “문제”라 함은 상기 “한자어 지문 텍스트” 내에서 상기 한자어의 뜻과 한자어 쓰기를 묻는 문제로서 각 “한자어 지문 텍스트” 당 4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 기술사용

제6조(컨텐츠 개발비 및 기술사용료)

① 본 컨텐츠 개발의 수행에 있어서, (을)은 (갑)에게 총 일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부가가치세 별도)를 컨텐츠 개발비로서 지급한다. 상기 컨텐츠 개발비는 (을)이 (갑)에게 아래 일정에 따라 지급하며, 이때 송금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 1) 1차분(3월 31일 지급): 오백만원(₩5,000,000)
- 2) 2차분(6월 30일 지급): 오백만원(₩5,000,000)
- 3) 3차분(8월 31일 지급): 오백만원(₩5,000,000)

② (을)은 상기 개발된 컨텐츠를 사용한 제품의 매출정율사용료(Running Royalty)를 아래 일정 및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매출액의 기준은 제7조에 정의한다.

- 1) 상기 개발된 컨텐츠를 제품화한 날부터 초기 2년 : 총매출액의 3%
(2005. 09. 01 - 2007. 08. 31)
- 2) 다음 2년 : 총매출액의 2.5%(2007.09.01 - 2009. 08. 31)
- 3) 마지막 2년 : 총매출액의 2%(2009. 09. 01 - 2011. 08. 31)

제7조(매출액의 계산기준 등)

- ① 제6조에 따른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에서 확인하며, 손익계산서상에서 상기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을)은 제6조의 매출정율사용료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기로 하여 계산하여 당해 매출정율사용료를 익년도 1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기술이전 - 기술사용

제8조(컨텐츠 개발 결과의 제출과 협조 및 저작권)

(갑)은 본 컨텐츠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본 컨텐츠개발의 결과물을 작성하고, 이를 (을)에게 제출하여 (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갑)은 기 개발된 “한자어 지문 텍스트”를 2005년 3월 31일까지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기 개발된 “한자어 지문 텍스트”를 포함하여 200개의 “한자어 지문 텍스트”를 2005년 8월 31일까지 (을)에게 제공한다.
3. (갑)은 기 개발된 “한자어 지문 텍스트” 200개를 포함하여 총 500개의 “한자어 지문 텍스트”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을)에게 제공한다.
4. (갑)은 기 개발된 (을)의 “뿌리한자 시스템”에 대해 감수하여야 하며, 추가 개발될 “한자어 지문 텍스트”의 감수도 수행한다.

제10조(결과물의 귀속)

- ① 본 컨텐츠개발기간 중 발생한 모든 결과물 및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산권 일체(이하 “연구결과물”이라 한다)는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하며, 해당 소유 지분율은 50:50으로 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제품의 제작·판매기간이 종료된 후, 상기 “연구결과물”에 대한 여하한 사업화에 관한 권리는 (갑)에게 귀속하며, (을)은 (갑)의 허락 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기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사업화를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제공, 처분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술이전 - 전용실시

제3조(전용실시권의 내용)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 한정하여 “계약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다.
- ② “을”은 제3자와 “계약기술”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술”의 이전이나 증여, 실시권 설정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갑”은 “을”이 “계약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을”은 상기 등록특허권과 관련한 상품개발 후 산업화는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년 이내에 산업화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제4조(실시기간)

- ① (실시기간)“을”의 “계약기술” 실시기간은 “생산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010년 8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을”은 본 계약체결이후 3개월 이내에 “계약기술”의 상세한 상업화 계획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이후 본 계약만료일까지 매 1년마다 연구, 기술개발, 상업화 진전사항 및 기타사항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 전용실시

제5조(실시 대가)

“을”은 경상실시료로 “생산개시일”로부터 본 계약 만료일까지 매년 본 “계약 제품” “매출액”의 3%를 제5조에 의거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실시료 계산 및 보고)

- ① (계산분기) “실시료”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분기로 하여 당해 실시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단, “생산개시일”이 생산개시 당해연도의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익년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② (자료제시) “을”은 실시료의 지급시에 관련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료 산출근거를 “갑”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지급지연) “을”이 실시료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을”은 해당년도 (주)하나은행 당좌대월금리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④ (확인) “을”은 세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회계기록과 장부의 확인을 위하여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을”의 공장,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관련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회계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 전용실시

제7조(기술자문)

- ① “을”은 실시와 관련하여 “갑”에게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Know-how 등을 포함한 기술에 대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 ③ 기술자문은 원칙적으로 “을”의 질의에 대해 “갑”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며, “을”의 방문 또는 전화, 팩스, 우편, PC통신, e-mail 등에 의해 수행한다.
- ④ 발명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성능시험 등은 “갑”의 기술자문에 따라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기술”의 개량)

- ①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계약기술”을 개량, 개선하여 개량기술을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개량기술 또는 개량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하며, 그 대가와 조건은 별도의 합의로 정한다.
- ② “갑”이 제1항의 개량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에게 우선협상권을 인정한다.

제9조(권리의 보호, 제3자 권리 침해)

- ① 발명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자가 상기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고 하는 사실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간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감사합니다

